

#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

의 번	안 호	547
--------	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6. 11.

제안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사유

- 상급기관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정원에 대한 보강신청안이 승인됨에 따라 신설, 폐지, 분합 또는 명칭변경되는 시 행정기구의 설치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여 책임소재와 임무를 명백히 하므로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코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신설 : 1국 1담당관실 3과 10계 (환경국, 전산통계담당관실, 시정과, 위생과, 시설공사과)
- 폐지 : 사회진흥과, 청소과, 수도과
- 명칭변경 : 2국 2과
  - 보건사회국 → 사회경제국
  - 지역경제국 → 건설교통국
  - 사회과 → 사회복지과
  - 가정복지과 → 여성복지과

## □ 참고사항

- 관련법규 (근거)
  - 지방자치법 제102조
  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
  - 경기도 자치 12200-3273 ('96. 11. 1) 호 공문
- 소요예산 - 339,394천원
  - 인건비 : 227,954천원/월
  - 물품구입비 : 50,690천원
  - 기타경비 (일반 업무추진비, 복리후생비, 여비) : 60,750천원
- 조례안 : 별첨

##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

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부시장)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.

②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고, 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.

제3조 (기구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, 기획실, 총무국, 사회경제국, 환경국, 도시국, 건설교통국을 둔다.

제4조 (감사담당관실) ①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을 둔다.

② 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시 행정의 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에 관한 업무
2.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
3.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
4.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

제5조 (기획실) ① 기획실에 기획담당관실, 문화공보담당관실, 전산통계담당관실을 둔다.

② 기획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실소관 및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
2. 시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
3.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
4. 시 재정운영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
5. 법제 및 소송 업무

③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. 시정홍보 및 기획보도에 관한 업무 | 5.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   |
| 2. 문화재 및 관광에 관한 업무    | 6. 언론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 |
| 3.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업무      | 7. 유선방송 및 공연에 관한 사항 |
| 4. 도서관 운영지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8.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관리
9.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신고, 등록 및 지도감독
10.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지도

④ 전산통계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전산화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
2.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 및 지원
3. 통신관련 업무의 종합계획수립 추진 및 장비 운용
4.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

제6조 (총무국) ① 총무국에 총무과, 시정과, 세무과, 징수과, 회계과, 시민과,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.

②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소관 및 총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, 조정
2. 문서, 공인, 보안, 청내의식 및 행사업무 추진
3. 공무원 복무관리·단속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4. 공무원 인사관리, 표창, 연금업무
5. 국제협력업무
6. 방위협의회 운영
7. 다른 실·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③ 시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주민여론 관리
2. 시 행정구역 및 반상회 운영
3. 새마을 운동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
4. 새마을단체 지원 및 운영지도
5.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 및 융자금 관리
6. 환경개선사업 추진
7. 선거 및 국민투표
8. 공무원 교육, 사무관리 개선,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

④ 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방세 부과
2. 지방세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청구 처리

3. 지방세무 사찰

4. 그밖에 부과업무에 관한 사항

⑤ 징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방세 징수

2. 세외수입의 과정 및 총괄

3. 기부금품 통제

4. 시금고 지도감독 및 검사

5. 그밖에 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

⑥ 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일반회계 및 일반특별회계 지출

2.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작성 및 의회 승인 신청

3. 국·도비 일반회계 출납 및 국·도비 일상경비 출납

4.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보관

5. 시설공사 용역등 입찰집행과 계약체결

6. 부정당업체 제제 및 관리

7. 물품의 조달 및 구매계약

8. 물품정수관리 및 재물조사

9. 국·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

10. 차량관리

⑦ 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민원사무의 종합조정

2.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

3.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

4. 제증명발급

5. 행정사 합동사무소 인가 및 행정사 지회 지도감독

6. 민원접수 처리 및 검열

7.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시행

8. 호적사무      9. 수령인 명표 관리

⑧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민방위 계획수립
2. 민방위 홍보 및 포상
3. 인력동원 업무
4. 민방위 시설물 및 장비관리
5. 민방위 교육훈련
6. 민방위 조직편성 운영
7.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확인
8.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인력·물자 시설동원(충무계획, 올지연습)
9. 병사 징집·소집 및 병력동원 업무
10. 공익근무요원 관리
11.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상황보고
12. 각종 시설물, 건축물 안전관리 및 지도

제7조 (사회경제국) ① 사회경제국에 사회복지과, 여성복지과, 위생과, 지역경제과, 공업과, 산업과를 둔다.

②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소관 및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수립, 조정
2. 행여환자, 보훈단체 관리
3. 장애인 관련 시책추진 및 시설운영
4. 의료보호관리 및 업무처리
5. 노인·청소년 관련 종합계획수립 추진 및 관련시설 운영

③ 여성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정복지 및 여성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
2. 아동복지 시책 수립 시행
3. 어린이 보육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
4. 여성회관 운영 지도

④ 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공중·위생업소 인·허가 및 행정처분
2.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·고발
3. 매장 및 묘지, 화장장 관련 업무

⑤지역경제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물가지도단속 및 저축·금융관련 업무
2. 시장개설허가 및 관리
3. 노사화합추진 및 인력수급 관리
4. 담배소매인 지정, 취소에 관한 사항
5. 가스 안전관리 및 수급관리
6. 석유판매업 인·허가 사항
7. 균로청소년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운영 지도

⑥공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공장설립 및 공업단지 지원 관리
2.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에 관한 업무
3. 광업지도 관리 및 염관리 지도
4. 중소기업 기술개발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
5. 전기 시설물 및 승강기 시설에 관한 업무

⑦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농정, 양정에 관한 업무
2. 농·수·축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
3. 축정에 관한 업무
4. 수산진흥에 관한 업무
5.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 지도

제8조 (환경국) ①환경국에 환경보호과, 녹지과, 하수과를 두다.

②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소관 및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, 조정
2.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(수질, 대기, 소음)
3. 배출시설의 공해감시(수질, 대기, 소음)
4. 기타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5. 청소사업소 운영 지도
6. 토양오염 관리
7.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
8. 해양오염원 정화 및 오염사고 수습대책 추진

③ 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양묘사업 및 양묘장 관리
2. 녹지조성 및 관리
3. 공유림 관리
4. 조경기술 지도
5. 꽃묘 가꾸기 및 도로변 화단 조성
6. 조림 및 육림
7. 산불예방 및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
8. 영림계획 및 시행
9. 임야매매증명
10. 보호수 관리
11. 가로수 식재관리
12. 임업기술지도
13. 산림해충 구제 및 야생 조수류 보호
14. 산림보호 및 계획수립
15. 공원조성 및 관리
16. 산림훼손허가
17.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
18. 공원, 산림감시분야 공익근무요원 관리

④ 하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하수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
2.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운영관리
3. 하천, 하수도공사의 측량, 설계, 시공, 감독
4. 하천, 하수도시설의 개량 및 유지관리
5.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
6. 하수처리장 건설 및 유지관리
7. 하천,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
8. 풍수해관련 재해대책 업무 추진 및 상황실 운영

## 18 (부록)

9. 농업용수 개발 및 농지개량
10. 관개시설물 설치 및 개량사업
11. 지하수 개발, 이용신고 수리
12. 환경사업소 운영지도
13. 그밖의 하수 및 치수에 관한 사항

제9조 (도시국) ①도시국에 도시과, 주택과, 건축과, 지적과를 둔다.

②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소관 및 도시행정의 종합계획수립, 조정
2. 택지조성계획 수립시행
3.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
4. 개발제한구역 관리
5. 환지계획 수립과 환지예정지 지정
6. 환지등기, 측탁 및 체비지 처분
7. 토지형질변경 복구
8. 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공동구 관리
9. 국토이용 계획 입안
10. 국토이용 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
11. 국토이용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입지 승인
12. 옥외광고물 관리 및 인·허가
13. 도시환경정비
14.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
15. 농어촌 환경개선 및 도서 낙도 개발사업

③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.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            | 6. 준주거지역, 일반주거지역, 기숙사단지<br>건축허가 및 관련사무 |
| 2.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            |  |
| 3. 건축사 수임사무에 관한 건축허가 및 관련사무 |  |
| 4. 지붕개량사업, 농촌취락개선, 변소개량 사업  |  |
| 5. 공동주택 사업승인, 사후관리 및 관련사무   |  |

7. 주택자재 생산업 등록 및 단속
8. 건축사 수임사무 점검
9. 주택불법 용도변경 단속
10. 도시계획구역외 (4층이하, 2000m<sup>2</sup>이하 균란생활시설, 주택) 건축관련 사무
11. 건축위원회에서 위임된 소심의위원회 사무

④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건축허가 (상업, 공업) 및 사용검사
2. 건축사 지도 및 건축위원회 운영
3. 도시설계 및 건축조례
4. 무허가 건축물 단속, 대부동 건축허가 및 사용 검사

⑤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개별지가 조사업무
2.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업무
3. 부동산증개업 허가처리 및 지도감독 업무
4.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업무
5.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 업무
6. 지적 통계
7.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
8. 지적공부 보존관리
9. 지적 민원처리
10. 이동지검사 및 정리
11.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
12. 토지조사 및 지적측량
13. 토지분할 허가업무
14. 건축물대장 관리 및 등·초본 교부
15.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

10조 (건설교통국) ①건설교통국에 건설과, 시설공사과, 교통행정과를 둔다.

②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소관 및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, 조정
2. 도로개설 및 교량가설에 관한 사항
3. 도시 도로공사의 지도감독
4. 건설공사에 따른 토지의 수용매수 및 보상
5. 노점상 관리에 관한 업무
6.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 업무
7. 그밖에 건설행정에 관한 업무

③ 시설공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공용 또는 공공용 공사(토목, 건축) 설계 및 감독
2. 시청사 등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
3.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
4. 가로등·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
5. 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 관련 업무
6. 자전거 도로 설치 및 관리 업무

④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교통기획일반 및 교통영향평가, 교통량 조사
2. 자동차 운수사업 인·면허 관리
3.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관련 업무
4. 화물유통 측진법 관련 업무
5. 자동차 관리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
6.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
7. 자동차 운수사업 행정처분 및 공영주차장 관리
8. 불법 주·정차 지도단속
9. 교통질서 계도 공익근무요원 관련 업무
10.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지도 (신설 '96. 1. 12 조례 663호)

제11조 (계의 설치) ① 담당관실 및 과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.

②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안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2항중 "기획계장"을 "투자심사계장"으로 한다.

②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2항중 "예산계장"을 "투자심사계장"으로 한다.

③ 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1항 제3호중 "예산계장"을 "투자심사계장"으로 한다.

④ 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2항중 "사회진흥과장"을 "문화공보담당관"으로 한다.

⑤ 안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중 "사회진흥과장"을 "사회복지과장"으로 하고,

제7조 제2항중 "건전생활계장"을 "노인청소년계장"으로 한다.

⑥ 안산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중 "가정복지과장"을 "여성복지과장"으로 한다.

⑦ 안산시여성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2항중 "보건사회국장"을 "사회경제국장"으로 하고,

제11조 제2항중 "가정복지과장"을 "여성복지과장"으로 하며, "부녀복지계장"을 "여성복지계장"으로 한다.

⑧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3항중 "보건사회국장과 지역경제국장"을 "사회경제국장"으로, 제10조 제3항중 "지역경제국장"을 "사회경제국장"으로 한다.

⑨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3항중 "지역경제국장"을 "사회경제국장"으로 한다.

⑩ 안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2항중 "도시국장"을 "환경국장"으로 한다.

⑪ 안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2항중 "도시국장"을 "상수도사업소장"으로 한다